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5. 12.
행정 위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4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5월 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4. 5.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업무에 대해 우리 구가 서울지역 야간진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충원할 수 있는 정원이 없어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17명으로 변경
- 집행기관의 정원 : 1,246명으로 변경
- 다.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와 573(2004. 4. 6.)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 4356(2004. 4. 6.)호 서울지역 야간진료 시범기관 정원승인 이첩 통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우리 구가 서울지역 야간진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야간진료를 원하는 주민과 일반병원의 이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구민보건 증진과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97
-----------	----

제출년월일 : 2004. 4. 2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업무에 대해 우리 구가 야간진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충원할 수 있는 정원이 없어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71명으로 변경
-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6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573(2004.4.6)호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4356(2004.4.9)호 서울지역 야간진료 시범기관 정원승
인 이첩통보와 관련입법률 제 4741호(1994. 3. 16.)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내용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1,267명”에서 “1,271명”으로 변경
-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2명”을 “1,246명”으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 증원되는 4명(집행기관의 정원4명)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67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2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정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71 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46명 2. 현행과 같음		